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3일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 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서류 송달 중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의 개정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의 면제 기준 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서류 송달 중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법률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5조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함.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